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2년 12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청소년관련 시설이 없는 우리지역에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설을 신축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문화의집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 예술, 정보, 스포츠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의집 기능 규정(안 제4조)
다. 직영으로 하고 이용대상과 이용방법으로 청소년은 무료, 청소년이외의 자는 허가 후 이용 등 운영방법 규정 (안 제5조～제7조)
라. 천재지변, 개보수 시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전전한 청소년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등은 이용자 제한 규정
(안 제8조～제9조)
마. 시설이용에 따른 부주의 등으로 인한 변상규정(안 제10조～제11조)
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규정
(안 제12조～제13조)

3. 참고자료

가. 근거법령 : 「청소년기본법」제8조, 제49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 제11조
나. 예산조치 : 2013년 예산에 반영, 예산담당부서와 협의완료
다. 기타
1) 입법예고(2012. 11. 23 ～ 12. 13)결과 ,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의견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이 설치하는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이하"문화의집"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간단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취미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수련시설을 말한다
3. "다목적 홀"이란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배양을 위한 영화, 세미나, 교육 및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 공간을 말한다
4. "시설"이란 문화의 집 내에 있는 다목적홀, 방과후 아카데미, 열린공간, 동아리실, 연습실, 지도자실 등의 시설과 비품, 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문화의 집 명칭은 성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 칭한다.
②문화의 집 위치는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9에 둔다.

제4조(기능)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청소년의 정보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3. 청소년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4.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5. 그 밖에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방법) ①문화의 집은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범위) ①문화의집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징수 할 수 있다.
②시설의 이용목적이 「청소년기본법」제2조의 기본이념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소년 이외의 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이용허가) ①문화의집 시설을 1일 이상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대해서는 협의로서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의 집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물을 개·보수 및 증축 등의 공사를 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이용자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건전 청소년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이용자의 설비) ①문화의집 기본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시켜 시설을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 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식 설비는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임의 처분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이용자는 문화의집 시설 설비 및 각종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의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보험가입 등) 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①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